

제 454 호

1974. 7.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백석
편집 : 문화정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신고 : 서울특별시 중랑발전소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례

제 859 호 서울특별시 척추상이용사소유의 토지, 건물 및 차동차의 관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조례) ······	3
제 86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 관찰처 조례(개정조례) ······	3
제 861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량제 개발사업 시행조례 ······	4
제 862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	9
제 863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	33

◎ 규칙

제 1376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 관칙제(개정규칙) ······	34
제 1377 호 서울특별시농지 사업 소득제(개정규칙) ······	34
제 1378 호 서울특별시 무허가 전용정비사업 보조금 지급조례(개정규칙) ······	3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공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379 호 서울특별시 금수조례 시행규칙중개정 규칙 36

◎ 고 시

제 81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42

제 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일 부변경 승인 44

제 83 호 비로판매영업 등록 45

◎ 공

제 121 호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및 환지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공람광고 45

제 122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 품생산지 정업체
변경 및 대체지정광고 46

◎ 사 명 47

조
례

국민총회법' 중 일부를 일본 서울특별시
서 척주상이용자 소유트럭, 전동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를 아래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59 호

서울특별시 척주상이용자 소유의
트럭, 전동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척주상이용자 소유트럭,
전동 및 자동차의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
대방동 492의 84 소재 재활용사
운」 다음과 「 및 서울특별시 동
대문구 달성동 4동 501의 13 소재
재활용상이용자의 운」을 상입한다.

부
록

이 조례는 1974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민총회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체고장 낙단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아래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0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 설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목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
는 일반부녀자의 지도계몽, 사업및
가정복지사업과 직업안정법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무로사업소
개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부녀사업관(이하 「사업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 3조 중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
고 등조에 제 5호 및 제 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설한다.

3. 구직자에 대한 주로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교도
5. 가정복지상담의 계획 및 실시

53-4 제 451 호

시

보

1974.7.1

6. 기타 부녀복지 학생에 관한
사항

제 5조 중 제목 「수학보호등」을
「수강료」로 하고 동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도의
수강을 허락받은 자는 다음의 수
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1. 수강료: 월 500 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주택개발사업 시행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4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1 호

서울특별시주택개발
사업 시행조례

제 1조 (적용) 전설부 고시 제 470 호
(1973.12.31)로 결정 고시된

주택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여는 주택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
업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 2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주택개
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양여받은
토지의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하나의 독
립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② 전항의 무상양여받은 토지의 사
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입은
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조 (사업비) 재개발사업에 소요
되는 사업비는 양여된 지구내 국
공유지의 분양수입과 채비지 매각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보조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한다.

제 4조 (사업법위등) 재개발사업은
시행자 부담으로 지구내 도로와

제 451 호 시설 및 녹지시설등의 도시계획시설과 배지를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동당 50평을 단도로 인정한다. 다만, 실험원 학교, 교회 기타 종교적 제전에 사용되는 건물, 구호시설등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물과 합법적으로 주민 가능한 양호한 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비용사용법위등)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양여된 국공유재산 대각대금과 이에따른 새개발 사업시행으로 수입된 금액은 지구내 공공시설과 배지조성 또는 아주 보상비(보상비) 등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전세입자에 대한 대체은 전문주택임차에 처리한다.
제 6조 (중전토지) 관리처분 계획의 표준이 될 중전토지의 각 필의 면적은 신시계획인가일 현재의 저택공부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	제 8조 (저장물 보상기준등) ①공공시설 및 공사시행에 저장이 되는 무허가건물 및 저장물은 적정한 이전 보상비를 지불한다.
제 7조 (연고권) ①신시계획인가일 현재 지구내 국공유지에 1970.6. 20이 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축조하고 사는 경우연고권은 인정한다. ②면적은 저작공부에 등재된 것은 저작공부에 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시장이 조사한 면적으로 하되	②공공시설에 저축되는 무허가건물을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 경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세밀아파트 또는 경착지를 제공 입주하게 한다.
제 9조 (토지의 관리) 시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계획 및 토지분할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 또는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	

임을 치지 아니한다.

제 10조 (증명 및 분할) 사업시행 기관중 보지에 대한 계약증명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환지 및 분양자의 분할 및 합병은 공공계획에 의한것 외에는 소유자 및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분양자의 분양신청은 분양 토지대금 원납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1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①사업시행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외에 의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8조 내지 제 54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위치 근처에 지정한다.

②공공용지의 배치전속계획 및 체비지 지정등으로 인하여 원위치 근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황 규정에 의한 위치에 대등하

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공공부지에 기여되는 사업주체가 환지면적의 형 소로 사업특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환지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증환지 가격은 금전으로 정수 한다.

⑤협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50평 이상으로 하며 이례에는 수인의 연고권자를 1필자로 하여 분양할 수 있다.

⑥부득이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때에는 동당 대지면적을 27평 이상으로 한다.

⑦해발 100미터이상 지구, 녹지 공공용지 및 도로용지는 분양에서

제 15 조 (별도 대책에 의거 처리 한다.)	형성을 병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제 15 조 (불량주택 철거 및 주택전립)
제 12 조 (특별지의 환지계획) 종전 토지 면적이 과소하여 환지 고부가 곤란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① 지구내 불량주택은 천연 철거한다. 다만, 건축법에 부합되고 소지이용 계획에 저촉되지 않은 건물은 예외로 한다.
제 13 조 (환지 및 분양예정지 지정)	② 주택전립은 원칙적으로 구획 및 건축계획에 맞는 4 가구 이상 일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한다.
① 사유토지는 감보율을 적용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국공유 토지는 사유토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보한 후 잔여면적은 분양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청산기준) 환지처분에 의하여 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과의 차에 환지의 평점단가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및 분양 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환지 및 분양처분) ① 사업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전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된 후 기제없이 환지 및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완료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제 14 조 (택지조성) ① 택지조성은 여건에 따라 시비 또는 주민부담으로 실시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환지 및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② 입지조성이 중요 도시경관상 중요시되는 지구는 점유주민을 이주시키고 보다 적조 높은 주택가	

<p>53-8 제 451 호 시 보 1974.7.1</p> <p>정한 사업을 토지소유자 및 연고 권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p> <p>제 18조 (대지등의 관리처분) 사업경 비에 충당할 대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경우 토 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9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사업종료에 따라 등기가 완료되었 을 때에는 환지증명서 및 분양지 조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 자 및 분양연고권자에게 각각 통 지하여야 한다.</p> <p>제 20조 (대리인선정) 토지소유자가 시행정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 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하여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 21조 (토지소유자등의 명의변경) ①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변경 될 때에는 자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전조 및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아니하므로 일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p> <p>제 22조 (제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토지는 구역내 토지소유자로서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당하였거나 지장을 허가당한 자 에게 타에 우선하여 매각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 통지일 로부터 30일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체결은 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소정 기일내에 시가 지시하는 시법설계도에 의한 주택을 건축 하지 아니할 때 4.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판명 될 때. <p>제 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실시계획 일자일로 부터 시행한다.</p>
--	--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를 아래 공포한다.

1974. 7.

서울특별시장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862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선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시장의 위치등) 서울특별시 부류별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 (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 : 채소류, 과실류, 채소저갈류, 전채소 및 전파실류

수산부 : 생선어개류, 상해조류, 어반류, 전어개류, 열전어개류, 연장어

개류, 건해조류

축산부 : 조수육류 및 동부살풀

② 도매시장은 부류별 출목중 허가된 출목안을 거래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설기금운용특별회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시장에서 수수하는 시용로 전부와 수수로의 100분의 20을 시설개선을 위하여 세출예산에 베회세년도마다 계상하고 이를 기금으로 거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기금의 전투자는 농수산물부자본이 시달한 기본지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1.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시장

2. 운영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우수한 시장

3. 시설개선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4. 기타 전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장

③ 시설기금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그 개선목적에만 투자되어야 한다.

제 5 조 (개장시간)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판계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도매시장에 종사하는 경매사, 중매인, 중매대리인 및 매매방가인등(이하 "판계사업자라 한다.)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2. 군고이상의 선교를 받고 그 행위 징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징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3. 판계사업자와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대행자와 그임직원

5. 당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 및 재력을 가지지 못한자

제 7 조 (점업의 금지) ① 도매시장의 대행자와 그임직원은 그배우자, 가족 등업자의 명의로 당해 도매시장의 계설지역내에서 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점업할 수 없다.

② 중매인과 중매인인 범인인 경우 그

임직원은 배우자, 가족 등업자의 명의로 도매시장 개설지역내에서 출하주의 업무를 점업하지 못한다.

제 8 조 (휴업일) 도매시장의 대행자는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휴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도매시장판계사업자

제 1절 대행자

제 9 조 (보증금액) ① 시장은 대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기본보증금을 부류별로 다음 금액의 범위내에서 도매시장 대행자 허가자에 이를 정한다.

다만, 대행자가 자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시장 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증금의 일수를 감면할 수 있다.

청과부: 1,000천원이상 3,000천원이하

수산부: 2,000천원이상 3,000천원이하

축산부: 2,000천원이상 3,000천원이하

② 전항의 보증금에서 사용료, 수수료 및 대행자에게 판매 또는 판매위탁을 한자의 채권이 변제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보증금을 보충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풍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통권은 액면가트

하의 것과가 액면가이하 일경우에는
식가에 의한다.

④보증금은 대행자의 자격상실일로
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이를 반
환한다.

제 10 조 (경매사등록) ①대행자는 서울
특별시에 등록된 경매사가 아니면
이를 경매사로 고용할 수 없다.
②대행자가 경매사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에서 발행한 경매
업무증사 경력증명서와 별지제 1호
서식에 의한 경매사 등록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경매사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기준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한 등록 접수일로부터 30일이
내에 경매사등록증(별지제 1호의 2)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경매사 등록을 받고자 하는자의
능력유무의 인정은 전형방법으로
정한다.

⑤경매사는 다음 자호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매인과의 암거래 허용
2. 중매인들의 거래상 달합방조
또는 뮤인
3. 화주 또는 중매인간의 어느일
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한 행위

4. 공정거래를 해하는 행위
⑥경매사가 전항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등록자
격 기준에 불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는 등록을 취소한다.

제 11 조 (경매사의 등록갱신) ①경매사
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록
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만 3년으로 한다.
③등록갱신 신청은 대행자가 유효
기간 만료일전 60일부터 30일사이
에 등록갱신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전조 제 3 항내지 제 5 항의 규정
은 등록갱신에도 이를 적용한다.

53-12 제 451 호

시 보

1974.7.1

제 12 조 (동록증의 휴대) 경매사는 경매시 동록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 2 절 중매인

제 13 조 (중매인 허가) ① 도매시장에서 중매업무를 하고자 하는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대행자 추천서와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중매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매인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 14 조 (중매인수) 도매시장에서 대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부류별 최소한의 중매인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형성의 성질에 비추어 전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을 승인을 얻어 갈 수 있다.

청과부 : 100 명

수산부 : 100 명

축산부 : 100 명

제 15 조 (중매인의 거래량) 부류별 월간 중매인 거래량의 최저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 : 1,000 천원

수산부 : 2,000 천원

축산부 : 2,000 천원

제 16 조 (중매인 수수료) ① 중매인이 받을 수 있는 중매수수료율은 경매가격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중매인이 허가시에 이를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항의 수수료율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 (담보의 제공) 허가를 받은 중매인은 대행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이후에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대행자와 협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담보금액) ① 중매인이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청과부 : 1,000 천원

수산부 : 2,000 천원

축산부 : 2,000 천원

<p>② 담보물은 현금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이어야 한다.</p>	<p>을 경우</p>
<p>제 19 조 (중매업무의 허가취소) ① 중매인에게 제 6 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중매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p>	<p>7. 도매시장 거래증권을 도매시장 밖에서 매수판매하였을 경우</p>
<p>② 중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p>8. 중매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1. 정당한 이유없이 제 13 조 제 1 항의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제 20 조 (영업변경 등의 제출) 중매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체없이 그 사실을 대행자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1개월 이상 그 업무를 휴업한 경우</p>	<p>1. 중매업무를 개시, 휴업 또는 폐지시 할 때</p>
<p>3. 중매인 거래고의 죄저 한도액</p>	<p>2. 벌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중 매인 허가신청서의 내용에 벌등이 있을 때</p>
<p>에 미달한 경우</p>	<p>제 21 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중매인은 매분기마다 6월 5일까지 벌지제 3 호서식의 중매인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제 22 조 (중매인과 장려금의 징수)</p>
<p>5. 중매업무 이외의 도매시장판매 업무를 하거나 출하주의 업무를 대체하였을 경우</p>	<p>① 대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중매인 완납장려금과 생선자의 출하장려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6. 벌령이나 기타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p>	<p>② 전항의 중매인 장려금과 생선자</p>

장학금의 합계금액은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 1항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대행자는 별지 제 4호 서식의 장학금 지급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산지중매인의 직접출하) 생 산지에서 경매된 물품은 생산지 중매인이 직접 출하하여야 한다.

제 24 조 (중매인 업무구역) 중매인은 중매업무가 허가된 시장 및 장소 외에서 도매시장 거래물을 중매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 25 조 (중매인과 소매인조합) ①중 매인 또는 소매인이 조합을 조직 하였을때에는 즉시 조합규약과 조 합원 및 임원의 명단을 첨부하여 대행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 은 소매업자 조합은 시장이 승인 한것으로 본다.

②시장은 중매인 조합과 소매인 조합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경우 에는 조합의 개별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26 조 (소매임의 출입제한) 도매시장에 출입할 수 있는 소매인은 소 매인 조합에 가입한 자에 한한다. 다만 소매인조합이 조직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대행자가 바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 3절 매매참가인

제 27 조 (매매참가인의 승인) ①매매 참가인은 도매시장 부류별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승 인신청서를 대행자를 거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 (매매참가인의 승인취소) 매매 참가인이 제 6조 제 1호, 제 4호 및 제 5호에 해당되거나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력신용이 상실되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4절 부속영업인

제 29 조 (부속영업회원) ①시장은 시장업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 고 인정될때에는 시장 및 시장시

설내에서 다음 자호의 영업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음식점업

2. 이 용업

3. 약국 4. 기타

② 전화의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대행자의 주민서와 함께 면적 제6호 서식의 부속영업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부속영업의 규제) 시장은 시장업무와 부속영업 행위의 전진한 운영을 위하여 부속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장 시장시설의 사용

제31조(시설사용의 허가) 중에 일 및 부속영업인이 사용할 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기타 사용조건은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3조(월상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

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건축, 개조 또는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시설반환) 사용자가 사망,

폐업, 폐쇄 업무허가와 취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리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인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용하면 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시설사용의 규제) ① 시장은 다음과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의 제한 및 경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관찰의 예방 교통 보전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 또는 공공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사용에 있어 하가한 목적 기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p>4. 시설목적이 변경되어 그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을 멀실 혹은 파손하였을 때</p> <p>6. 사용료 기타납부금의 납입을 대 안히 하였을 때</p> <p>7. 법령 또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위반하였을 때</p> <p>(2) 전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행정 대질행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를 대질행하고 그경비를 사용자에 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한다.</p> <p>청과부 : 배상료의 1,000 분의 2</p> <p>수선부 : 배상료의 1,000 분의 2</p> <p>축산부 : 배상료의 1,000 분의 1</p> <p>제 39 조 (시설사용료의 납부) ① 시장은 대행자 중매인 부숙영업인의 사용료 를 다음의 범위내에서 월별로 징수 한다. 다만 개설자 시설에 한하여 전조의 수수료율을 합산한 금액이 도매거래액의 1,000 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p> <p>공지사용료 : 1평방 미터당 215 원</p> <p>중매인 점포사용료 : 1평방 미터당 130 원</p> <p>사무실 및 기타시설물 : 1평방 미터 당 60 원</p> <p>냉동시설사용료 : 1평방미터당 210 원</p> <p>②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수도 천화 등 제세공과금과 기타도매 시장의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③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사용여부 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납부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p>
<p>제 36 조 (보수명령) 시장은 시설을 손 상하게 한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 거나 그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p> <p>제 37 조 (시장의 청소) ① 시장의 청소는 대행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p> <p>제 38 조 (대행자의 수수료납부) 대행자 는 법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의 수수료를 월별로 납부하여야</p>	

제 4 장 매매거래방법 및 결제방법

제 40 조 (입하수량 등의 공표) ① 대행자는 매일 판매시간까지 입하량 입하예상량, 상장할 물품의 수량 및 산지 그리고 전일에 거래된 주요물품의 수량 및 가격을 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 개장시간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1 조 (시장의 거래금지) ① 대행자는 시장외에서 도매시장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행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자 성명 및 주소
2. 지정장소 및 기간
3. 취급할 물품 종류
4. 설치이유

제 42 조 (반입물품의 제한) ① 시장은 시장에 반입한 물품중 위생상 위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

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의 중지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3 조 (거래의 단위) ① 매매거래의 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중량으로 거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판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는 전항 단서에 의한 단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규격화) 대행자는 출하된 물품을 선별하고 규격화하여 이를 상장하여야 한다.

제 45 조 (차별적취급의 금지 등) ① 대행자는 시장업무에 관련하여 출하지 중예인 및 매매찰기인에게 부당한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행자가 거래물품의 판매위탁을 받은 경우 영업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수탁을 거부할 수 없다.

제 46 조 (시장출입자표지) ① 시장에 출입하는 관계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를 착용하여

아 한다.

② 전항의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일정한 입장장으로서 이에 활용할 수 있다.

제 47 조 (매수자의 제한) ① 시장은 중매인과 매매참가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매매거래의 정지, 입장의 금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 기타 시장에 관하여 발생한 금전의 납부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 거래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매수한 물품의 대금 또는 계산금의 지불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규정한 재판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5. 시장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때

6. 범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7.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③ 중매인의 대리인이 전항의 경우에

해당하였을 때에도 중매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48 조 (매매방법) 도매시장에서 행하는 매매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가매매 또는 상대매매를 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입하가 지연되는 경우
 3.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하고 그 잔존물이 생긴 경우
 4. 특정 물품
 5. 기타 가격정책상 필요한 경우
- 제 49 조 (상대매매 또는 정가매매방법의 승인신청) 전조 단서의 매매방법을 승인받고자 하는 대행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①○매매방법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수탁판매원칙의 예외) ① 대행자는 도매업무에 있어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제산으로 매매를 행할 수 있다.

1. 수탁판매가 어려울 경우 2. 대행인과 중매인 또는 매매참가 인간의 계약에 따라 납품확보가 필요한 경우	③전항의 경우에 차손금이 있을 때 에는 당초의 예수인이 이를 부담하 여야 한다.
3.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보관 또 는 저장한 경우	제 53 조 (소매인조합회 확인) ①중매 인은 시장이 승인한 소매인 조합이 조직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이 발행한 벌지 제 10호서식의 물품인 수 확인증을 소매인으로부터 받고 반출증과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가제산판매를 하고자 하 는 대행자는 벌지 제 8호서식의 자 기제산판매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물품인수 확인증은 대행자 가 보관한다.
제 51 조 (반출증발급) ①대행자는 경 락된 물품에 대하여 벌지 제 9호서 식의 반출증을 예수인에게 발급하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 54 조 (부정판매에 대한 재판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달달 거 타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반출증은 대행자가 사건에 시장의 경인을 얻어 발급하되 따로 발급대장을 비치 운영하여야 하며 반출증의 유효기간은 당일로 한다.	제 55 조 (매금정산) 예매대금은 예매 가 성립된 경우 즉시 결산하여야 한다. 다만 담승물품의 예매시에는 이 일까지 계산서를 송부하고 이문 위 탁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되, 지불기일 에 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나.
제 52 조 (매매물품의 인수) ①매매가 성립하였을 때에는 예수인은 즉시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 56 조 (판매대금의 잡액금지) 대행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경매된 판매 대금을 잡액할 수 없다. 다만, 검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확
②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예수물 품의 인수를 배제하였을 때에는 대행자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그 물 품을 보관하거나 또는 최고하지 아 니하고 예매를 해제하여 다시 판매 할 수 있다.	

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0 조 (보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할 수 있다.
제 57 조 (미수체권의 회수) ① 대행자 외 중매인과 매매참가인에 대한 미수체권은 영업규정에 정한 의상거래 한도에 불구하고 7일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제 61 조 (검사) 검사공무원은 증표를 제시하고 도매시장에 관계되는 재산장부, 서류, 물건 기타 필요한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미수체권회수가간후 다시 7일을 경과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자는 중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③ 소정기일 15일이 경과되면 대행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법적인 수속을 할 수 있다.	제 62 조 (감독처분) ① 시장은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하가, 승인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 58 조 (위탁수수료 및 다른 보상수수의 금지) ① 대행자가 판매위탁자로 하여금 수납할 위탁수수료를은 다음과 같다.	② 시장은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이나 조치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입장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 관계사업자 및 부속영업인에 대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과부 : 판매가격의 100분의 7.0 수산부 : 판매가격의 100분의 6.0 축산부 : 판매가격의 100분의 2.5	
② 대행자는 전항의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제 59 조 (매매참가인의 의상거래금지) 매매참가인은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행자와 따로 약정이 있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3장 감 독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내로 이전개시하는 날로부터 이전
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 원로후 초기 1년간은 제 3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0.5
양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하가받은
로 한다.
- 증여인, 등록된 경매사 하가된 부속 다만 이전을 개시하기 전까지의 매
영업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하가 행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이전의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유통인 1,000분의 5를 적용하였다.
- ③(등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 ④(폐기구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93
시장 수산부본장 및 청과부본장의 호(1956.8.14) 서울특별시 중앙
대행수수료는 한국농장주식회사의 구 도매시장 업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칙	면 적	
		대 지	전 평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본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2 가 16 번지	12,138.2	3,553.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본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2 가 16 번지	11,132.2	8,06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본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광동 220 번지	14,416.2	6,876.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영등포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량진동 13-8	47,142.2	28,274.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 수산부 용산분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 가 16-9	39,388.2	18,700.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 영등포분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139 번지	10,728.2	3,123.2

53-22

제 451 호

시 보

1974.7.1

<별지 제 1호서식>

경매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
		3일	
신청인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경매사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서울특별시장귀하 신청인

①

구비서류

- | | |
|--------------|------|
| 1. 이력서 | 1통 |
| 2. 주민서 | 1통 |
| 3. 신원증명서 | 1통 |
| 4. 병적확인서 | 2통 |
| 5. 신체검사서 | 1통 |
| 6. 국세 및 시세증명 | 각 1통 |
| 7. 경력증명서 | 1통 |
| 8. 사진 | 2매 |

제 451 호 시 보 1974.7.1 53-23

<별지 제 1호의 2>

경 배 사 등 툐 증

서 울 특 별 시

증사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장 부 장

거래 품목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등록일자 : 197

농수산물도매시장법 제 20 조에 규정된 경배사등록을
위하였음을 증명함.

197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인

100mm X 70mm

59-26 제 451호

시

1974.7.1

<별지 제 2호서식>

증 빠 인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3월	
신 청 인	(1) 본 적		
	(2) 주 소		
	(3) 소 속		
	(4) 주민등록호	(5) 성 명	(6) 19 .. . 생
	(7) 업무구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서 울 특 별 시 장 권 하 신 청인		①	
구비서류		수 입 인 지	
1. 서약서	1통	입 윤	
2. 인감증명서	1통		
3. 이력서	1통		
4. 추천서(업무대행 회사)	1통		
5. 신원증명서	1통		
6. 병적확인서	1통		
7. 국제 및 시세 완납증명	각 1통		
8. 계약서사본	1통		
9. 사 진	1통		
10. 신체검사서(채용)	2매		
2708-1-13A(1971.11 총인)		190mmx268mm (신문용지 50쪽/권)	

제 451 호 시 보 1974.7.1 52-25

별지 제 3 호 서식

중 매 인 영업 보고서

중매인허가번호	제	호	성명
시 장 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	
거래 품목			

거래 내용

구 분 순 번	거래량 ()	거래액 (원)	수수료수수액 (원)
상 (1 - 10) 순			
중 (11 - 20) 순			
하 (21 - 말일) 순			
합 계			

위와 같이 년 월 일 영업실적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장조례 제21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197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매 인.

부

◎

서울특별시장 귀하

53-26 제451호

시 표

1974.7.1

현지 제4호서식

장 려 금 지 금 승 인 신 청 서

신청 시 장 명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대행자회사 및 대표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상증취급액	금	원정
지급비율		1,000 분의
지급액	금	원정
지급대상	의령(별지 지급대상자 내역참조)	
지급기간	자 197 년 월 (월분)	자 197 년 월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22조에
의거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급기간 거래내역표(총괄) 1부

197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

◎

서울특별시장 구하

별지 제 5호 서식

예 예 참·가·인 승 인 신 청 서

신	본 적	서 도 군 군	구 동 면	의 회 면	민 자
	주 소	서 울 특 별 시	구	동	민 자
청	소속·시장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부 (품 목 :)	
	주민등록 번호	성 명	생년월일	19	
인	영업장소 및 번호	서 울 특 별 시	구	동	상 회
	영업감찰 번호	제 호			

대행자 경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④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부 (품 목) 예 예 참·가·인 승 인을 서 울 특 별 시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조례 제 27 조에 의거 면 칠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

신 청·인

④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구 띠 서 류

- | | | | |
|-----------------|-----|---------------|-------|
| 1. 이력서 (사진첨부) | 1 통 | 5. 병적 확인서 | 2 통 |
| 2. 신원 증명서 | 1 통 | 6. 재용신 대금 사서 | 1 통 |
| 3. 재산 평가 조사 | 1 통 | 7. 국세 및 세세 증명 | 각 1 통 |
| 4. 대행자 추천서 | 1 통 | | |

53-28 제451호

서 1974.7.1

별지 제 6 호 서식

부 속 영업 허가

신	본 척	시 구 동	읍	면	번지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청	소속시장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품목:)
인	주민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19 . . .
	영업구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규정 제29조제2항에 의거
별첨서류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 안.

①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 | | |
|-------------|-------|
| 1. 이력서 | 1 통 |
| 2. 추천자(대행자) | 1 통 |
| 3. 신원증명 | 1 통 |
| 4. 명적확인서 | 2 통 |
| 5. 채용신체검사서 | 1 통 |
| 6. 재산평가조서 | 1 통 |
| 7. 서약서 | 1 통 |
| 8. 국세 및 시세 | 각 1 통 |

제451호 시보 1974.7.1 53-29

별지 제7호서식

○○ 매매 허가증 신청서

대 행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시 도 군 면 리 번 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장		
		주민등록 번호		
품 목	단 위	수 량	금 액	비 고

승인신청사유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귀하

53-30 제451호

사 보

1974.7.1

별지 제8호서식

자 기 계 산 매 매 술 인 신 청 서

대	주 소	시 구 동 번지		
행	상 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장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품 목	단위	수 량	금 액	비 고

승인신청서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7

신청인

④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451호 시보 1974.7.1 53-31

별지 제9호서식

반 출 증

반출: 영업장소

업자: 상호

영업점 찰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반출상황	품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원

반출년월일 197 년 월 일

본증 유효는 당일에 한함.

위와 같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 시장에게

반출하는 물품임을 증명함.

197 년 월 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 시장

서울특별시 경인

(신문용지 134mm x 190mm 4사)

53-32 제451호

시 고

1974.7.1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인 수 확 인 증

반 출 업 자	영업장소		
	상 호		영업감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반 출 상 황	품명 구분		금 액
			원
			원
			원

출고년월일 197 년 월 일

상기 사실을 확인함.

197 년 월 일

확인조합명

확인자 ○○조합장

⑧

위급자인

(전문용지 134mm x 190mm 복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1974. 7. 1.

서 울 특 별 시 장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863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령
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 16조제 1항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불균일과세대상) 전조의 불
균일과세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재 보호법 제 7조, 제 9조
및 제 10조와 서울특별시지방문
화재 보호조치 제 16조제 1항에

해당하는 가옥 및 그 대지

2. 문화재보호법 제 11조와 서울특
별시 지방문화재보호조례제 7조회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중 긴급조치제 16조제 1항제 1호에
 해당하는 토지

제 3 조 (세율) 전조의 건물 및 토
지에 대하여는 긴급조치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 188조 세율을
적용한다.

제 4 조 (사무처리위임) 제 2조의 규
정에 의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
항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록

이 조례는 197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제제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76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
관제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제제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직무) 사업관은 부녀자의
지도계통과 부녀복지상담 및 가정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과 무료직업
소개,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
한 사항을 관掌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제제중 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77 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
관제제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제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업무분장」을 「사무분장」
으로 한다.

제 2조 및 제 3조를 각각 다음과 같
이 한다.

제 2조(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지방농림기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
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 3조(조직) ①사업소에 서무제와
사업제를 두고, 서무제장은 지방행
정주사, 사업제장은 직방농림기사로
보한다.

②사업소장 제별분장사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서무제

가. 문서, 관인 및 기밀

나. 인사, 복무, 급여

다. 예산, 회계 및 용도

라. 물품장비의 관리

마. 소내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제 451 호 시 보 1974. 7. 1. 53-35

2. 사업계

가. 사방조립설계 및 사공감독
나. 녹지대 가로수시설 및 유지관리
다. 노면철개지 이화설계 및 시
공감독

라. 시공지 사후관리

제 4 조를 삭제하고 «제 5 조» 를
«제 4 조»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무하 가전불정비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74. 7. 1.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 규칙제 1378 호

서울특별시 무하 가전 물
정비 사업보조금 지급조
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무하 가전 물 정비 사업보조
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무하 가전
물은 조례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무하 가전물이어야 한다.

제 4 조중 «10만원» 을 «15만원»
으로 한다.

제 8 조 제 2 호중 «주민동록본» 을
«주민동록등본» 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이전에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방침이 결정되고 시행당시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무하 가전물에 대한
보조금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금액으
로 지급한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7. 1.

서 울 특 별 시 장

53-36 제451호 시

1974.7.1.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79호

서울특별시 금수조례
시행 규칙 중개 정규칙

서울특별시 금수조례시행규칙 중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의 2 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 12조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항의 인정조건은 가사용에 있어서는 인구 매 1인에 대하여 월
4kg에 수요전율 명당 0.2kg를 가
산해서 정수한다. 다만 합산하여
1kg미만인 량에 대하여는 계산하
지 아니한다.

제 17조 중 「전월의」를 「1전 1개

2. 영업용 제 1종

월 7회하고 통조에 제 3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수 사용실적이 없는 공용급수천
제 3조제 3항, 제 3조의 2, 제 4조 및
제 6조제 3항 중 「시장」을 각각
「관할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제 1호 중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5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제 1호
금수종별구분표에 의거 금수업종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는 1974년 8월
정수분부터 적용한다.

호	업 종	적 요
1	국 장	
2	호텔, 여관	
3	운행, 본점점	
4	식당, 음식점	
5	병 원	
6	요정, 요리점	한식, 일식, 중국식, 양식요리, 카바예, 바, 클럽, 회관등

호	업 종	적 요
7	백화점	
8	인쇄소, 출판사	율령시설이 있는 업체
9	다방, 빙과점	
10	한 중 약	
11	세탁소	세탁기계시설을 보유한 업체
12	이발관	
13	주유소, 주차장, 세차장	
14	꽃집, 식육업	
15	사설 학술강습소, 학원	
16	보령장	
17	예식장	
18	양조업, 계분업	
19	제당업, 제빙업	
20	청량음료제조업	
21	제약업	
22	도살장	
23	염색소	
24	실내스케트장, 수영장	
25	풀장 (개인 풀장포함)	
26	칼라현상소, 사진관	
27	식료품제조 및 가공업	
28	빌딩	이 규칙 금수종별구분표 각항에 명시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도가 주택건물이 아닌 4층이상의 건축물(지하층포함)
29	기타	1. 위에 개기한 업체외에 영업용도나 종사원 및 내객용으로 월 60명정도 급수가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업소에 대한 금수 2. 영업용계 2층에 해당하는 2개이상의 업체가 단일양수기를 경유하여 금수를 사용할때

3. 영업용 제 2종

호	업 종	적 요
1	세 탁 소	영업용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사립대학부속병원	
3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4	당 구 장	
5	주점	선술집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추류판매업
6	인쇄소	영업용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라면, 국수, 맹류등 간이식사
7	간이음식점	
8	정육점	
9	여인숙 및 하숙업	
10	미장원	
11	사무실	
12	기 원	
13	철물점, 육재상및 물역상	
14	방앗간	
15	기 타	영업용 제 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및 공업용 금수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체로서 영업용도 또는 종사원용으로 금수를 사용하는 업체

4. 공업용: 재조가 공업소로 등록된 업체로서 월평균 100㎥이상 사용하는 다음에 계기하는 업소에 대한 금수

호	업 종	적 요
1	방직 및 직물가공업	
2	기계기구제조공업	
3	유지공업	
4	주물 및 제철공업	
5	제자공업	
6	고무제품제조업	
7	섬유공업	

53-40 계 451 호

시 보

1974.7.1.

제 5 호서식

(천연)

○○○ 구수도사업소

수도제방기 검침카드

※ 수도요금을 내실때는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밟으시고 5년간 보관하십시오.

- 푸 알 아 두 심 시 읍 -

경 칭 일 회

수도사업소직원이 귀택을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반드시 일회하고 본 카드에 지침수·월 사용량을 기입도록 카드를 제시하여 주시고 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소장실 00-0000번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요 금 납 부

1. 상업 은행 본지점
2. 서울시금고
3. 0007 수도사업소
4. 수도사업소 담당직원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체 량 기 보 호

1. 계량기 위에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놓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계량기 보호통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3. 계율에는 양수기가 열지 않도록 첫째, 알고등은 언제나 열어놓고, 뒷고등만 사용하세요. 둘째, 가마니, 왕거, 스치로 물 통으로 양수기를 보호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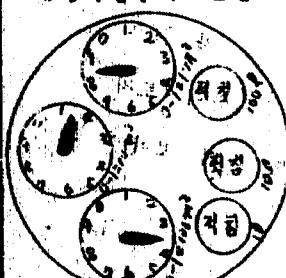
카 드 보 관

이 카드는 계량기가 있는 근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시고 이사하실 때에는 다음 분에게 인계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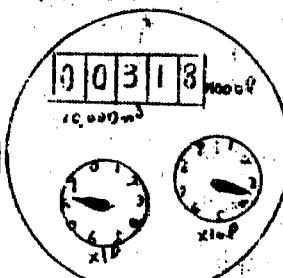
수 도 고 장

계량기를 지나가는 물이 수도고장이나 누수가 될 경우 수도요금은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으니 확인하시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해당 양수기보는법 치록식 양수기보는법



위 그림의 사용량은
318입니다.



위 그림의 사용량은
318입니다.

수도원원 신고

인원신고 00-0000

요금문의

과장 1세 00-0000

과장 2세 00-0000

고장신고

공무 1세 00-0000

공무 2세 00-0000

1974. 7. 1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81호

도시계획시설(소로)
점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중 영창지구의 1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소로)를 다음과 같이 절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가. 지구조서

제 12조 및 제 13조의 규정과 전
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출장소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22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동명	비고
영창지구	영창동, 양화동	
천호지구	문촌동	

(1) 서울도시계획 도로 확정초서별첨 별첨 1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2) 서울도시계획 도로 확정도면별첨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출장소에 보관함

로선조사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위	연장	기점	종점
소로	2	1	8#	710m	영창동강변	영창동 25-5 앞	
"	"	2	"	600	" 산 30-27%	" 76-16	
"	"	3	"	160	" 산 20-33	" 산 24-1	
"	"	4	"	140	" 65	" 74	
"	"	5	"	240	" 53-1	" 산 62-1	
"	"	6	"	270	" 86	" 104	
"	"	7	"	170	" 97-2	" 산 82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소로	2	8	8 m	330 m	양화동 53-1	양화동 산 3-4
	소로	3	1	6 m	120	영창동 7-3	영창동 2-5
	"	"	2	"	76	" 2-4	" 6-1
	"	"	3	"	230	" 5-13	" 산 20-1
	"	"	4	"	370	" 20-6	" 5-13
	"	"	5	"	200	" 22-2	" 산 30-20
	"	"	6	"	1,200	" 산 30-21	" 112-2
	"	"	7	"	290	" 산 30-3	" 66-1
	"	"	8	"	70	" 62-2	" 62-3
	"	"	9	"	"	" 62-4	" 111-4
	"	"	10	"	306	" 59-1	" 산 62-1
	"	"	11	"	280	" 100-45	" 106-10
	"	"	12	"	96	" 95-2	" 95-4
	"	"	13	"	220	" 102-3	" 112-2
	"	"	14	"	1,000	양화동 153-6	양화동 산 3-4

천호지구 (제 8 공구)

구분	등급	유형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소	2	1	4 m	143.5 m	둔촌동 433 일	둔촌동 416 일
	"	"	2	8	126	" 464-6 당	" 산 52 "
	"	"	3	"	194	" 산 50 일	" 산 52 "
	"	"	4	8	99	" 462-3 전	" 532-2 전
	"	"	5	8	52	" 532-4 전	" 581-1 전

53-44 제 451 호

시 보

1974. 7. 1

구분	동급	유형	번호	면적	연장	기적	통계
소	3	1	3 #	108 #	문촌동 423-1 담	문촌동 43.3 일	
소	2	6		166	415 일	436 "	
소	3			108	416 일	416 "	
소	4			195	197 전	464-6 담	
소	5			197.5	476-2 담	483-3 전	
소	6	6		111	497-2 전	382-1 "	
소	7	6		641	424 담	479-2 "	
소	8			514	412 전	533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8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 일부 변경 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

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 조의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123 호(73. 4. 4)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관악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6. 22

서울특별시 장

가. 지적변경조서

구분	동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결	종 결	비 고
기정	중로	3	37	12	6030	상도동 (대 3-18)	상도동 (중 3-35)	광주시 광산에역 주어 일부변경
변경	"	"	"	"	"	"	"	

별첨 도면표식과 같은(도면생략) 도면은 서울시청 및 광악구청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83호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비로 판매 영업 등록

1974. 6. 24

마을과 같이 비로판매영업등록을
하였기 비로단속법 시행령 제 6 조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 번호	등록 또는 교부 년월일	판매 자주 소성명 및 판매장 소재	비로명	보증성문량	기타규적
1-1	등록 1974	1. 주 소 : 서울특별시중로 5가 243 2. 성 명 : 안기운	제5중복합비로 (액체비로) 일명 : 복살	질소 4 % 인산 4 % 가리 3 %	비량요소 각 종

유효기간 : 1974. 6. 24 ~ 1977. 6. 24.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21호

제 11 항제 55호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 12 조, 제 34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고한다.

1. 서울특별시 시흥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3 조
제 11 항제 55호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 12 조, 제 34 조, 제 55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구획정리 1과와 영등포구청 시
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
다.

53-46 제451호

시 보

1974. 7. 1.

3.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될 것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대해서는 이 공고로 <u>잘</u> 알	한다.
	1974. 6. 25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지침별	폭	연장	위치	폭	연장	위치		
서흥지구	도로	8m	60m	독산동산 58-5 208-1	8m	43m	독산동산 58-5 208(4)	위치 변경	

나. 공 람 개 요

1) 사업명 : 서흥토지구획정리사업

2) 변경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산동 208-1
일대 (52, 53구획)

3) 변경조서 및 도면 :

생략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구획
정리 1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
사실에 비치)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변경 및 대체지정 공고중소기업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변
경사항 및 대체지정사항을 서울특별
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6.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22 호

서울특별시장

1. 대체지정

변경전				변경후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309	대신편물 공업사	강용수	동대문구 답십리 414	에타	309	대신편물 공업(주)	강용수	동대문구 담 사리 474-6	에타

2. 변경지정

변경전				변경후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613	별창률산 주식회사	태석규	서대문구 을 화동 1-95	완구	613	별창률산 주식회사	태석규	마포구 현 석동 146	완구

사 령	
◎ 1974. 6.22	세정과 세원계장에 보함. 보건행정과 주 주 사 이영진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청소 1과 작업계장에 보함. 중 구 주 지방행정 사 이성준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 1974. 6.24	충구 청소과장에 보함. 인사과 지방행정 사 박해림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공무원교육원 사무국 사무계간 직무대리에 보함. 법무담당관실 동원 1계장 김성환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동원담당관실 동원 1계장에 보함. 회계과 지방행정 사 한동식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동대문구 사회과장에 보함. 용산구 주 지방행정 사 신길우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사회과 사회계장에 보함. 회계과 지방행정 사 원성택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마포구 사회과장에 보함. 인사과 지방행정 사 윤병택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함.

2호봉을 급함. 마포구 청소과장에 보함. 중 구 주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6호봉을 급함. 용산구 시민봉사실장에 보함. 종로구 주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종로구 사회과장에 보함. 용산보건소 지방행정 주 사과 죄동조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종로구 청소과장에 보함. 청소 1과자업 지방행정 주 사과 이영규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종로구 산업과장에 보함. 주택행정과 주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시민회관 관리과장에 보함. 사회과사회 지방행정 주 사과 강대현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지하철본부 운수과 심사계장에 보함. 성북구 주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영동출장소 시민봉사실장에 보함. 중 구 청소과장 사무관 신재식 총무과 차량제작에 보함.
3호봉을 급함. 성북구 주택과장에 보함. 시정개발 지방행정 담당관실 주 사과 김용희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종로구 지방행정 사무관 이우택 시민과 문서통제제작에 보함. 마포구 사회과장 사무관 이경배 새마을지도과 지도제작에 보함.
3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청소과장에 보함. 운수 2과 주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용산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조성우 시민과 문서관리제작에 보함. 종로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이준호 양정과 양정제작에 보함.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서무과장 사무관	유 명 든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김 상 분
단속과 단속제장에 보합.		동대문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합.	
용산구지방행정 사무과장 사무관	이 흥 윤	동대문구보건소 지방행정 민원봉사실장 사무관	신 기 훈
공무원교육원 교학과 교무제장에 보합.		도우시립소 서무과장에 보합	
도우시립소 지방행정 서무과장 사무관	방 준 환	서 일 과 지방행정 문서관리제장 사무관	송 용 석
안전담당관실 관리책장에 보합.		인사과 고과제장에 보합.	
세 정 과 지방행정 세원제장 사무관	강 선 국	인사과 지방행정 고과제장 사무관	남 상 수
용산구 산업과장에 보합.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에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사회과장 사무관	임 찬 호	충 우 과 지방행정 의전제장 사무관	김 중 경
동대문구 청소과장에 보합.		충주과 차량제장 겸직을 연합.	
서 대 문 구 지방행정 청소과장 사무관	선 병 순		
서대문구 산업과장에 보합.		● 1974. 6. 25	
마포구 지방행정 청소과장 사무관	신 영진		이 편 남
영등포구 산업과장에 보합.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새마을지도자 지방행정 지도제장 사무관	엄 진 설	1호봉을 급함.	
관악구 세무 2과장에 보합.		시민과 근무를 명함.	
시 민 과 지방행정 문서통제제장 사무관	정 만 호		임 익 민
운동장 운영 담당관에 보합.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영등포구 지방행정 산업과장 사무관	유 문 호	1호봉을 급함.	
성북보건소 위생과장에 보합.		시정개발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관악구 지방행정 세무 2과장 사무관	김 재 원		김 명 수
도봉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합.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종로구 지방행정 청소과장 사무관	김 기 동	1호봉을 급함.	
관악구보건소 민원봉사실장에 보합.		법무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53-50 제 453 호

시 보

1974.7.1

고 강 무	유 암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안전 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
조 수 호	최 철 규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세정과 근무를 명함.
나 동 운	이 수 경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개량 1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최 병 험	김 일 중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정 개발 담당관실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천호출장소 근무를 명함.
박 종 호	정재진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 기 덕	전영태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개량 1과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최 성 오		금 영 세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적 오 근	양식 출장소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중구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박 총 호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학 남 수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노 수 만	1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 근무를 명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		술집당당분실 지방행정 (군복무유적증) 주사보 무대영
	정 철 성	부지국을 명함.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녹지국 근무를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양식 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서보 금 영 세
	장 진 호	임용연기로 인하여 74.6.25자
지방행정주사보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신규임용발령 (발령제 576호)을
		동일 자로 취소함.
용산구 근무를 명함.		경 설 국 장 시설기감 이 총 운
		시민회관장 겸무를 명함.
		지 방 부이사관 안 칠 희
		시민회관장에 보함.

53-52 附 451 章

21

四

1974.7.1.

서울특별시 (직위별제) 부이사관	안찬희	급수과 지방토목 기기사보	정진호
부칙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이철우	동대문 지방토목 수도사업소 기기원보 도봉구 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하동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1974. 6. 25.	영등포구 지방전기 중구 근무를 명함.	김성관
대통령		성동구 지방전기 중로구 근무를 명함.	김성연
지하철관리과이 사회장자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에 입함.	이철우	구회장리 1파 한자 1계장 지방토목 기기과 장은순	
4호봉을 급함.		지방공무원법 제 65조 2 제 1 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지하철관리과 인사계장에 보함.		1974. 6. 29	
경기도내무국 지적기과 세정과지적제장	지중구	조경과 영동출장소 공원과 지방전기 기기사보 지방농림 기기사보 주한식	정진환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정과 지적제장에 보함.		(74. 8. 15 까지)	
보건사회국 의약과장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백용기	1974. 7. 1	
1974. 6. 25.			
대통령			
● 1974. 6. 28			
(본부 청과 (군부부부직종) 주사보시보 부칙을 명함.	지방행정 기기사보 전형문	지방기기원보 시보에 입함.	정구갑
행정과 근무를 명함.			

1호봉을 굽함.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양서읍장소 근무를 명함. 장 병 태	박 흥 백 지방수의사보 시보에 입함.
지방기계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굽함.
1호봉을 굽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가축위생시험소 근무를 명함. 토목과(토목 지방토목 시험소과전중) 기사 한국영
김 영 철	구획정리 2과 근무를 명함.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	성 북 구 거 기 사 쟈 식
1호봉을 구함.	토목과 근무를 명함.
서부위생처리장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사 천 해 풍
형 용 일	토목과 근무를 명함.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입함.	도 시 지방토목 기사 흥 성 수
1호봉을 굽함.	가스사업소 기사
연로시험소 근무를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전설부기자도 토목기사보 강 재 열 로전설사후소	마포구 지방토목 기사보 안기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구획정리 2과 근무를 명함.
지방토목기사보에 입함.	한강전설사 지방토목 기사보 을재 열
3호봉을 굽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도봉구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토목 기사보 양영규
박 남 수	한강전설사업소 근무를 명함.
지방화공기사보시보에 입함.	세정과(직 위해체증) 지적기사 흥기태
1호봉을 굽함.	부처를 명함.
	중로구 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 장